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. 9. 1 선고 2016가단431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9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대 985m² 중 1/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. 5. 25. 접수 제29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, 청구원인과 증거서류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구하는 취지이므로, 이와 같이 선택하여 기재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손주철

별지